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공보담당관 자범준

전화 051-780-4302

보도자료

2024. 3. 19.(화)

제목

설 연휴 기간 중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송영인)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인 손자녀가 공모하여 친할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손자 A를 지난 3. 8., 손녀 B를 오늘(3. 19.) 각 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편성하여 약 한 달간 ① 검·경 합동 현장검증, ②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, ③ 대검 임상심리분석, ④ 법의학감정 의뢰, ⑤ 출동 구급대원 친인척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,
 - 2016. 12.경 아버지의 사망 이후 홀로 지내게 된 A(지적장애 2급)의 생활 전반을 할머니이자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해자가 챙기며 장애인 연금과 월급,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관리하여 왔는데,
 - A는 피해자의 돌봄을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고, B는 피해자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, 피해자가 없어지면 통제로부터 벗어나 A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
 -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계획범죄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앞으로도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

I

사건관계인

가. 피고인

- A (남, 24세)
- B (여, 28세)

나. 피해자

- C (여, 78세, 피고인들의 친할머니)

II

공소사실 요지

- A, B는 친남매로서 유일한 친족인 피해자가 평소 A의 장애인 연금과 월급,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, '23. 12.경부터 '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. 사고사로 위장하여 없애 버리자'라는 취지로 수 차례 살해를 공모하고,
- 위 공모에 따라 '24. 2. 9. A는 설날 인사를 핑계로 처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벽면 등에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같은 날 23:52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

III

수사 경과

- 2. 9. 설 연휴 사건 발생, 피해자 사망
- 2. 10. 경찰,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 긴급체포, 구속영장 발부
- 2. 19. 경찰, 존속살해 혐의로 A 구속 송치 (B와 공모 정황 발견)
검찰, 전담수사팀 구성
- 2. 23. B 구속영장 발부
- 2. 29. 경찰, 존속살해 혐의로 B 구속 송치
- 3. 8. 검찰, A 구속 기소
- 3. 19. 검찰, B 구속 기소

《검찰 주요 수사내용 (2. 19. ~ 3. 19.)》

- ▶ A, B, 피해자의 각 주거지, 카드사용·계좌 등 금융정보, 통신내역,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(총 11회 영장 집행)
- ▶ 주임검사 주관 하에 범행현장에서 검·경 합동 현장검증 실시
- ▶ A 등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 분석
- ▶ A의 심리상태·범행동기 관련 대검 통합심리분석, 범죄심리분석
- ▶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분석, 법의학 감정 의뢰 및 출동구급대원 조사
- ▶ 범행동기·양형 관련 가족·지인 등 주변 참고인 조사

IV

수사 결과

① 계획적 공모공동 범행

- A는 긴급체포 시부터 송치 직후까지 “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방어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.”라며 **우발적 단독 범행임을 주장**하였으나,
- **검찰 조사 시** 피해자의 상처 부위,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자, **처음부터 살해할 계획**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**폭력을 행사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**함
-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, B가 피해자의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**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119 신고 및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논의**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, 그에 따라 지적장애가 있는 A가 범행을 실행한 후 “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”라고 119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

② 주된 범행동기 규명

- A는 자신의 장애인 연금과 월급,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**피해자의 지나친 간섭**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**불만이 쌓여**갔고,
- B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A의 재산을 혼자서 관리할 의도로, 평소 자신에게 의존하던 A가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던 **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먹게** 하고, **살해방법** 등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됨

③ 피해자와 손자녀들과의 관계 확인

- A, B는 피해자에 대해 '평소 장애인이라고 A를 무시하고 심한 말과 욕을 많이 하였다'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,
- 친인척 및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A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됨

V

향후 계획

-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,
-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☑